

ISSN 2734-0317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0

VOL.11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김경화 수석연구원

홍정완 수석연구원

Contents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요 약

01. 인도의 수입규제 최근 동향	1
02. 무역규제 법규 개정 시행	8
03. 반덤핑제도 운영상의 주요 특징	13
04.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4

김경화 수석연구원(02-6000-5954, kyounghwa.kim@kita.or.kr)

홍정완 수석연구원(02-6000-8383, jw.hong@kita.or.kr)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총 63건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46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현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도 총 116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조사는 주로 석유화학 또는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주된 무역구제 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인도는 적극적인 무역구제제도 활용과 더불어 2017년 말 이후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조사당국의 일원화’ 형태의 조직개편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조사가 상공부 산하의 각기 다른 총국(Directorate General)에서 운용되어 왔다. 반면 2018년 5월부터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이라는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인도 무역구제 정책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구제총국은 2018년 12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수량제한을 아우르는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법 개정은 상계관세 관련 우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우회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상계관세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반덤핑 규정에 정합되도록 보완하고 있다. 이해관계인들이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온라인 상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내생산자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보고서는 인도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및 법규 개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가장 활발히 활용되어 온 반덤핑제도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특징, 실제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관행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문 및 매뉴얼 분석 결과 조사 과정상의 절차적 요건들이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절차적 요건들이 과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적 요건인 덤핑마진의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밸류체인(Value Chain)의 완전성 입증 의무 등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유의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외국 수출자들의 대응 부담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인도로부터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적용 받는 국가로 특히 석유화학, 철강 업체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인도의 각종 무역구제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범위는 비단 석유화학, 철강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품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조사 관행상 제소 접수 사실은 즉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동향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조사 개시 전부터 ‘성공적인 방어 경험이 많은’ 자문사 선임 결정 등 선제적인 대응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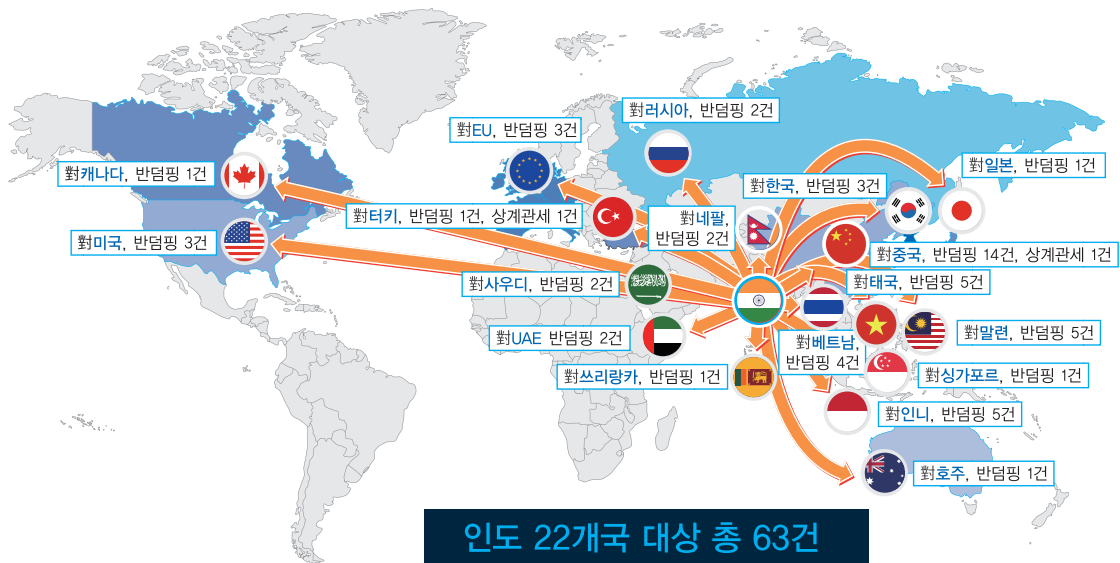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최종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덤핑/보조금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최근 조사 절차상의 변경 사항과 법규 제·개정 현황, 인도 고유의 조사 관행들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 현지 수요 기업과 공조하여 인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미중 통상 분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인도의 수입규제 최근 동향

(1) 인도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현황

- 인도는 작년에 2001년 이후 최대 수치인 78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하고, 2020년 8월말 기준 22개국을 대상으로 총 63건의 신규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020년 1월~8월 인도 對세계 신규조사 개시 현황〉



자료: DGTR

- 인도의 對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건수는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16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2020년 8월말 기준 조사개시 건수가 작년 동기간의 46건에 비해 17건이 증가하였으며, 동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2019년 연간 조사개시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對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추이〉

(단위: 건)

기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월~8월)
건수	41	19	20	32	40	30	69	49	46	78	63

자료: DGTR

- 인도의 수입규제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2020년 8월말까지 인도의 수입규제 신규조사 누적 건수는 중국이 가장 많은 77건, 그 다음으로 한국 24건, 태국 22건 등으로 나타남
- 국별로는 2020년 8월말까지 인도의 신규조사 총 63건 중 중국에 대해 가장 많은 15건의 조사를 개시함
 - 중국 이외에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및 태국 각각 5건, 베트남 4건, 한국 및 EU 각각 3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됨
 -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신규조사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인도의 주요국 대상 신규조사 개시 현황〉

(단위: 건)

연도	중국	한국	태국	말련	인니	EU	대만	베트남	사우디	일본	미국
2016년	22	7	4	1	4	6	3	1	2	5	—
2017년	15	1	3	4	5	3	3	1	1	1	—
2018년	16	4	5	3	3	2	2	2	2	—	1
2019년	9	9	5	8	3	4	4	5	3	3	3
2020년 (1월~8월)	15	3	5	5	5	3	2	4	2	1	3
합계	77	24	22	21	20	18	14	13	10	10	7

자료: DGTR

- 인도 무역구제총국에서 199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인도의 수입규제 신규조사를 개시한 건수(누적)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건), 한국(82건), EU(76)건 등으로 나타남

〈인도의 주요국 대상 신규조사 개시 누적 건수(1992~2020년 8월말)〉

(단위: 건)

국가	중국	한국	EU	대만	태국	인니	미국	말련	일본	싱가포르
건수	259	82	76	70	60	50	49	49	41	33

자료: DGTR

- 품목별로 화학 및 플라스틱,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신규조사 개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인도의 對세계 품목별 신규조사 개시 현황〉

(단위: 건)

연 도	화학	철강/ 비철금속	섬유	전자	종이/목재	플라스틱	고무	기계	유리/ 도자기	기타	합계
2016년	31	16	9	1	—	—	9	2	—	1	69
2017년	19	1	15	3	7	—	—	3	—	1	49
2018년	8	12	1	1	3	17	3	1	—	—	46
2019년	24	23	8	—	5	2	4	4	6	2	78
2020년 (1월 ~8월)	25	11	8	—	12	1	4	—	2	—	63
합 계	107	63	41	5	27	20	20	10	8	4	305

자료: DGTR

- 1992년부터 집계한 품목별 누적 신규조사 개시건수는 화학이 487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고 철강/비철금속이 153건(14.3%), 섬유 100건(9.3%) 순서로 확인됨

〈인도의 품목별 신규조사 개시 누적 건수(1992년~2020년 8월말)〉

(단위: 건)

품목	화학	철강/ 비철금속	섬유	전자	종이/ 목재	플라스틱	고무	기계	유리/ 도자기	기타	합계
건수	487	153	100	71	64	62	43	31	26	37	1,074

자료: DGTR

- 형태별로는 1992년부터 올해 8월말 기준(누적) 반덤핑이 가장 많은 1,040건이었고, 상계관세 27건, 글로벌 세이프가드 4건, 양자 세이프가드 3건으로 확인됨

- 반덤핑 신규조사의 경우 화학 품목에 479건으로 집중되었고 철강/비철금속 144건, 섬유 99건 순으로 나타남
- 상계관세의 경우 철강/비철금속에 대한 신규조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학 및 종이/목재 각각 5건, 고무 3건 등임

— 한국산 고무 품목 1건(Styrene Butadiene Rubber)에 대해 상계관세 신규조사가 개시됨

○ 세이프가드는 4건의 글로벌(Global) 세이프가드와 3건의 양자(Bilateral) 세이프가드¹⁾ 조사가 개시됨

-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경우 2018년 태양열 전지(Solar Cells), 2019년 페놀(Phenol), 단일모듈 광섬유(Single Mode Optical Fibre), 아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대한 신규조사가 개시됨
- 양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싱가포르(CECA)에 대해 팜유, 한국(CEPA)에 대해 무수프탈산, 폴리부타디엔 고무 등 총 3건에 해당함

〈인도 형태별 · 품목별 신규조사 개시 누적 현황(1992년~2020년 8월말)〉

(단위: 건)

품목	화학	철강/ 비철금속	섬유	전자	종이/목재	플라스틱	고무	기계	유리/ 도자기	기타	합계
반덤핑	479	144	99	68	59	62	39	31	24	35	1,040
상계관세	5	9	1	2	5	—	3	—	2	—	27
글로벌 세이프가드	2	—	—	1	—	—	—	—	—	1	4
양자 세이프가드	1	—	—	—	—	—	1	—	—	1	3
합계	487	153	100	71	64	62	43	31	26	37	1,074

자료: DGTR

1) 양자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당사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임.

(2) 최근 인도 수입규제 급증 배경

□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 급증은 인도의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정치적 요구와 당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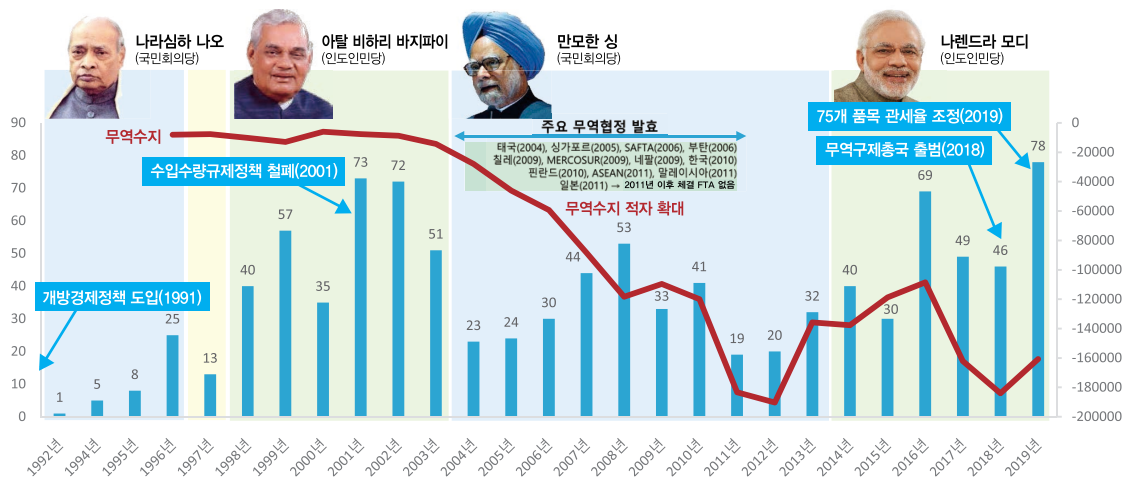
- 인도는 1991년 개방정책 이후 관세정책 및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해왔으며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 출범 전까지 대외경제 개방 통상정책을 유지했음
 - 인도는 1991년 IMF 구제금융 이후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고 2001년 수입수량규제 정책이 완전 철폐되며 관세정책과 WTO에서 허락하는 수입규제를 적극 활용하게 됨
 - 이에 2001년부터 수입규제는 한시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4년 제14대 총선에서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INC) 주도의 통합진보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 정권교체 이후 다자·양자 무역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게 됨
- 2014년에 출범한 모디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다자·양자 무역정책 추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입대체 및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는 등 민족주의 및 親기업·제조업 육성 정책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주의로 정책 변화도 나타남³⁾
 - 2009년 통합진보연합이 재집권에 성공하지만 부정부패 문제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잃게 되자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에서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았던 구자라트 주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를 전면으로 부각시켜 2014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게 됨
- 모디 정부는 'Make in India'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육성정책을 내세우며 인도 내 제품 생산을 위해 관세 일부 조정, 수입규제 관련법 재정비 등 산업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여 시행
 - 2018년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총괄하는 무역구제총국을 출범시키는 등 관련법을 재정비함
 -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2016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함
 - 2019년에는 예산안 발표 시 75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였으며, Make in India와 추가세수 확보 목적으로 57개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조정함

2) 인도 정치동향 및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 인도 개황 (2018)” 참고.

3) Surupa Gupta, et al. “Indian Foreign Policy under Modi: A New Brand or Just Repackaging?”,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20(1), (2019): 1 – 45.

〈인도 對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무역수지 및 통상정책 현황〉

(단위: 건/백만불)



주1: 무역수지는 해당 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

주2: SAFTA,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자료: DGTR, INDIA Department of Commerce, 코트라 인도 뉴델리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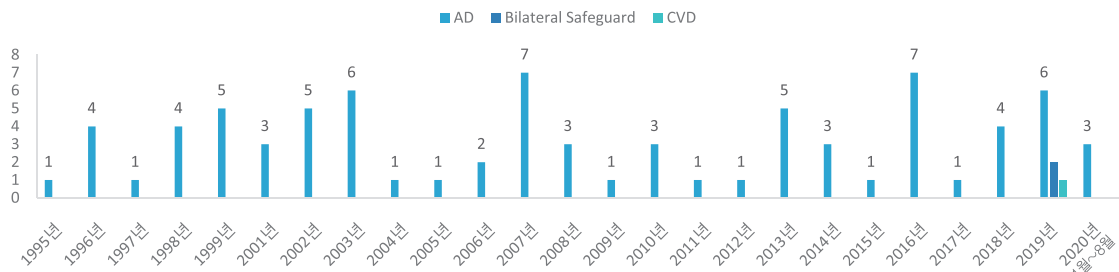
(3)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

□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 신규조사는 2019년 9건, 금년 1월~8월에는 3건이 개시됨

- 2019년 인도는 한국에 대해 반덤핑 6건, 양자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1건의 조사를 개시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산 PTFE(Polytetrafluoroethylene) 우회덤핑 조사를 포함하면 총 4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추이〉

(단위: 건)



자료: DGTR

□ **인도의 최근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은 이미 규제가 종료된 제품에 대해 재차 신규조사를 개시하거나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적으로 수입규제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2020년 신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중 무수프탈산 및 고무노화방지제의 경우 전자는 이미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 중인 품목이고 후자는 반덤핑 부과기간 만료로 최근 조치가 종료된 품목에 해당함
 - －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한국, 대만, 이스라엘에 대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반덤핑 관세가 별도로 부과된 적이 있음
 - － 고무 노화 방지제(Rubber Chemicals PX-13, 6PPD)의 경우 2008년부터 한 번의 일몰재심을 통해 조치기간이 연장된 후 2019년 7월말에 규제종료 되었으나 2020년 5월 반덤핑 신규 조사가 다시 개시됨
- 2019년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폴리부타디엔 고무(Polybutadiene Rubber)의 경우에도 과거 반덤핑 조사대상 이력이 있음
 - － 폴리부타디엔 고무는 2016년 반덤핑 조사개시 후 2017년 12월 산업무피해 판정으로 조사단계에서 종결되었으나 2019년 11월 다시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됨
- SBR고무(Styrene Butadiene Rubber)는 현재 반덤핑 규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조사가 추가적으로 개시됨
 - － SBR고무는 1999년 반덤핑 조치가 부과된 이후 일부 품목이 2001년 중간재심을 통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품목은 2006년까지 반덤핑 규제가 지속된 이력이 있음
 - － 중간재심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에 반덤핑 조사가 새로 개시되어 2017년에 규제 판정을 받았으며 2019년 상계관세 조사가 추가로 개시됨

□ **인도는 전통적으로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나, 최근 5년간 철강/비철금속에 대한 신규 조사건수가 7건으로 화학 6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미국 및 EU의 철강 수입규제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4건의 신규조사를 개시함
 - － 철강 품목의 경우 1992년 이후 인도로부터 총 16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냉간압연롤(Forged Steel Rolls)과 석도강판(Tin Mill)을 제외한 14건은 모두 중국과 함께 제소된 것으로 확인됨

2 인도의 무역구제규정 개정

□ 인도 재무부는 2020년 2월 2일자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함⁴⁾

- 동 개정은 ▲WTO법과의 합치성을 제고하고 ▲특정 용어(예: 동종물품, 조사대상기간 등)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며, ▲기존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정이 반덤핑 규정과 정합되는 방향으로 조문을 구체화함
- 2019년 7월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관련 법규 개정안(proposal)이 발표되었으며, 이 때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던 ‘최소부과원칙’ 관련 규정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음⁵⁾

□ (상계관세 우회조사)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우회’ 관련 규정으로, 반덤핑 규정과 일치하도록 상계관세 규정 하에서도 우회조사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에 공통적으로 우회 범위를 확대 신설함⁶⁾

- 인도에서 우회방지 규정은 2011년에 인도 관세법 Section 9A의 하위 Section (1A)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2년 1월에 우회 조사에 대한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정한 4개 조항이 신설됨
 - 이 규정은 상계관세가 아닌 반덤핑관세에만 적용되었으며, 우회로 간주되는 범위도 제한적인 편이었음
 - 기존 우회덤핑의 범위는 ①인도 또는 제3국에서 조립 완성된 경우, ②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 ③반덤핑 관세 조치 대상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한 수출(제3국 환적)로 구분되었음
- 반면,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①기존 세 가지 유형의 우회 범위를 상계관세에도 적용하는 한편, ②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에 공통적으로 우회의 유형으로서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무력화하는 어떤 경우’도 우회로 간주한다는 광범위한 요소를 추가함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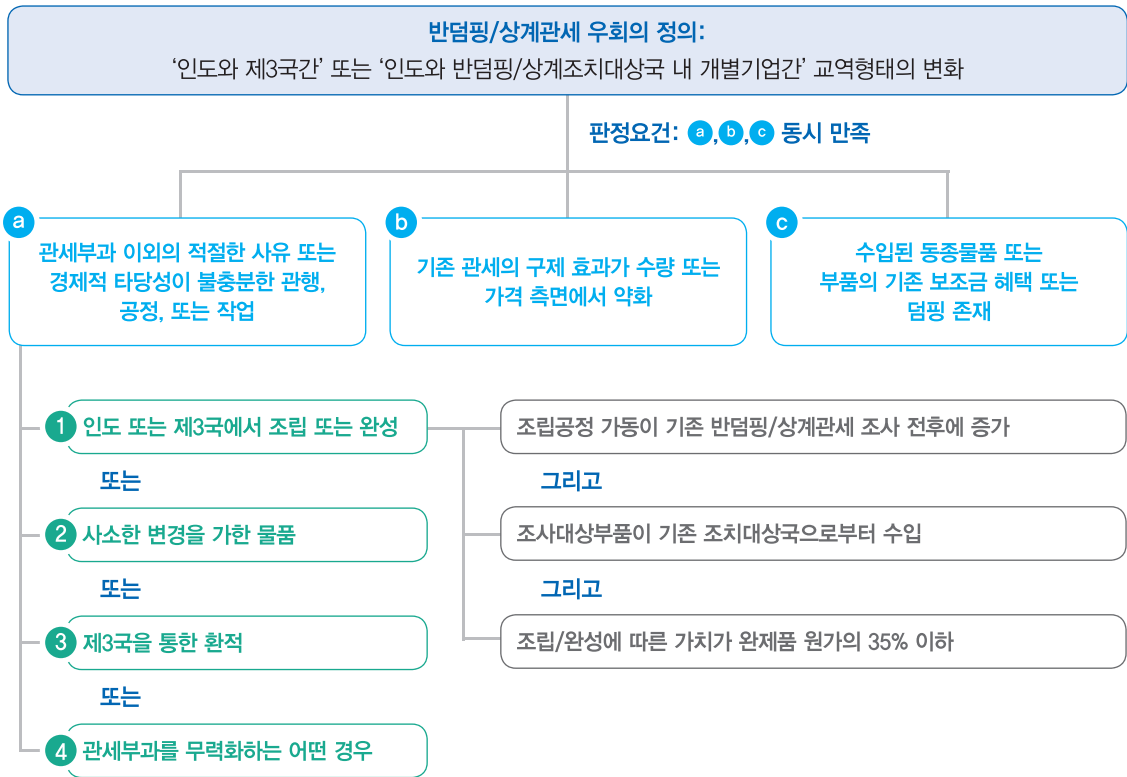
4)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No. 09/2020–Customs (N.T.) and Notification No. 10/2020–Customs (N.T.)(2020년 2월2일).

5) 기존에는 산업피해마진과 덤핑/보조금 마진 중 낮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이 강행규정이었는데, 2019년 7월 개정안에서는 여러 예외 조항을 두거나(반덤핑규정) 보조금 마진만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등(상계관세규정) 좀 더 높은 관세를 부과 가능한 방향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2020년 2월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규정에는 동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에서 ‘Make in India’ 및 보다 최근에 나온 ‘Self-Reliant Indian Mission’ 이니셔티브 하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최소부과원칙의 폐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개정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6)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No. 6/2012–Customs (N.T.)(2012년 1월19일).

7) Sub-rule 2(d) of Rule 25 of the Customs Tariff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이하 Anti Dumping Rules 1995) ; Rule 25 of the Customs Tariff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Countervailing Duty on Subsidiz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이하 CVD rules 1995).

〈반덤핑/상계관세 우회조사 - 실체적 요건 판정 프로세스〉



자료: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No. 10/2020–Customs (N.T.)(2020년 2월2일) 참고

- 상계관세 우회조사는 우회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한 청원 외에 조사당국의 직권에 의해 개시될 수 있음
 - 조사는 12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조사당국은 기존 상계관세조치를 우회한 것으로 판정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우회 조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우회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지속을 위한 재심은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조사당국의 직권에 의해 개시될 수 있으며, 이 때 관세 부과 이후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고 재심 개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함

〈반덤핑/상계관세 시행령 주요 개정 · 신설 내용(2020년 2월 2일 시행)〉

구분	개정 · 신설 내용	비고
Rule 2(b) of the CVD Rules 1995	– 설명: 다음의 경우에만 국내 생산자가 보조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1) 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2) 동인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3) 동인들이 함께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함	(상계관세규정) 국내산업 요건을 반덤핑 규정과 동일하도록 신설
Rule 2(ca) of the CVD Rules 1995	– ‘동종물품(like article)’은 고려 중에 있는 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조사를 고려 중에 있는 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물품임	(반덤핑, 상계관세 규정) 동종물품 정의 신설
Rule 2(da) of the Anti Dumping Rules 1995, Rule 2(cb) of the CVD Rules 1995	– ‘조사대상기간(period of investigation)’은 덤핑/보조금의 존재가 검토되는 기간을 의미함	(반덤핑, 상계관세 규정) 조사대상 기간 정의 신설
Rule 22(3) of the Anti Dumping Rules	– 협조하였으나 조사되지 않은 생산자 · 수출자에게 부과되고 있던 반덤핑 관세는 원심 조사에서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해당 생산자 · 수출자에게 연장 적용될 수 있음 – 설명: 동 규정의 목적상, 조사대상기간은 (i) 조사개시일 현재 6개월 이내에서 기산하여 (ii) 12개월의 기간으로 하나, 조사당국은 최소 6개월 또는 최장 18개월을 고려할 수 있음	(반덤핑 규정) 신규수출자책임 관련 조사대상 기간 정의 신설
Rule 6(6) of the CVD Rules 1995	– 조사당국은 조사개시결정이 나지 않는 한 조사신청에 대한 공표를 피해야 함 – 설명: 동 규정의 목적상, 조사대상기간은 (i) 조사개시일 현재 6개월 이내에서 기산하여 (ii) 12개월의 기간으로 하나, 조사당국은 최소 6개월 또는 최장 18개월을 고려할 수 있음	(상계관세 규정) 조사개시 관련 요건 신설
Rule 6A of the CVD Rules 1995	– 상계관세 조사 신청이 수락된 후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조사개시 전에,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수출국은 조사신청서와 관련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약에 초청되어야 함 – 또한 조사기간 전 과정을 통틀어, 조사대상 국가는 실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상계관세 규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13조와 합치 목적상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 관련 규정 신설

구분	개정 · 신설 내용	비고
Rule 11(1)(c) of the CVD Rules 1995	기존에는 제한된 수의 '사람'에만 한정된 반면, 개정 후 제한된 수의 '사람, 기업, 산업, 지정된 지역'을 포함	(상계관세 규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2조와 합치 목적 상 특정성 요건 개정
Rule 17(6) and Rule 22(2) of the CVD Rules 1995	- 조사당국은 정기적으로 약속 이행을 감독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검증을 위해 수출자 및 수입자의 정보를 구할 수 있음 - 약속위반 시 조사당국은 중앙정부에 약속위반 사항을 가급적 빨리 알리고,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위반일자부터 잠정조치 부과를 권고할 수 있음 - 이 때 확정관세는 잠정조치 적용 전 90일 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물품에 부과될 수 있음 - 단 약속위반 이전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소급산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계관세 규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18.6조와의 합치 목적 상 약속 위반 시 잠정조치 부과 관련 규정 개정
Rule 24 of the CVD Rules 1995	- 관세법 Section 9 하에서 부과된 상계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 유효함 - 확정관세 부과 후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고 재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정보가 제출된 경우 조사당국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함. 만약 조사당국은 해당 상계관세 조치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정부에 기존 조치의 철회 또는 종료를 권고해야 함 - 기존의 확정 상계관세는 재심사의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나, 조사 당국이 그 기간 이내에 개시한 재심사에서 관세의 종료는 보조금의 지속 또는 재발 및 산업피해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종료되지 아니함 - 재심사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상계관세 규정) 반덤핑 규정과의 일치 및 WTO 협정 제21조와의 합치 목적 상 재심사 관련 절차적 요건 구체적으로 개정

□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를 규율하는 1975년 관세법 Section 8B 관련 개정 내용도 현재 2020년 Finance Act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관보로 아직 공표되지 않아 발효된 상태는 아님⁸⁾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관세'에 국한되었던 세이프가드 조치 유형을 보다 확대하여 할당관세율 (Tariff Rate Quota, TRQ)을 포함

8) 1975년 관세법 Section 8B 개정 내용을 포함, 세제상의 변경에 필요한 여러 법 개정안을 담은 2020년 Finance Bill은 상·하 양원의 표결을 통과한 뒤 2020년 3월 27일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2020년 Finance Act가 되었음. 2020년 Finance Act에 포함된 많은 내용이 2020년 4월 1일 부로 시행된 반면, 세이프가드 개정 내용인 Section 116은 시행에 필요한 관보상의 공식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1975년 관세법 중 세이프가드 관련 개정안 주요 개정·신설 내용〉

구분	개정·신설 내용	비고
용어 변경 (세이프가드)	- 규정 전체를 통틀어 '세이프가드 관세(duty)'를 '세이프가드 조치(measure)'로 용어 변경	
조치의 종류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관세율할당(TRQ) 방식, 또는 중앙 정부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다른 조치를 의미함	신설 규정
조치의 적용 (세이프가드)	- 관세율 할당 방식의 조치는 다른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통계가 입수 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켜서는 안됨 - 중앙정부는 관련 물품의 공급에 실질적 이해를 가진 공급국들에게 TRQ를 할당할 수 있음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준용하여 규정 신설

3 반덤핑 제도 운영상의 주요 특징

□ 인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해 온 반덤핑 제도를 중심으로 인도의 조사절차 및 마진산정 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봄

- 분석에는 ①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2020년 9월 1일까지 최종판정이 나온 반덤핑 조사 판정문 분석과 ②인도 무역구제를 오랫동안 대응해온 업체 및 협회, 국내외 전문가의 인터뷰를 주로 활용

〈인도 반덤핑 제도 운영상의 주요 특징과 유의사항〉

구분	주요 특징과 유의사항
조사 절차에서 발견된 특징	(1) 조사 절차 개관 - 예비판정 생략, 절차적 요건 준수 경향 강화
	(2) 규제 존속 기간 - 잠정조치 발동시 잠정조치일로부터 5년 부과
마진 산정 및 관세 부과 과정에서 발견된 특징	(3) 비관계상사의 답변 의무 (밸류체인인의 완전성)
	(4) 불리한 이용가능정보(AFA) 적용
	(5) 인도 국내산업의 비생산 모델에 대한 반덤핑 조치
	(6) 높은 수준의 조사(재심) '개시'대비 실제 '조치'비율
	(7)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방식과 인도의 총 관세 산정 방식

(1) 조사 절차 개관

□ (조사기간)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최종판정이 나온 케이스들을 집계하여 살펴본 결과, 반덤핑 원심 조사의 평균 조사기간은 약 317.8일로 미국의 원심 평균 조사 기간인 약 329⁹⁾일과 유사한 수준임

- WTO 반덤핑 협정상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종결된다고 정하는데, 인도 상무부 반덤핑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11개월 이내 조사 완료 지침을 마련함¹⁰⁾
- 일몰재심과 우회덤핑조사의 평균조사기간은 각각 233.5일, 235일로서 원심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 되는 편이며, 중간 재심이나 신규수출자재심은 개시에서 판정까지 약 1년 이상의 장기 시간이 소요됨

9) 200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2019년 7월31일까지 최종판정이 나온 원심조사 263건의 평균 조사 기간임.

10) 업계·전문가 인터뷰 참고. 원심의 조사기간은 WTO 반덤핑 협정에서 정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나, 인도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p.8)에서는 조사개시에서 최종판정에 이르는 기간이 6-8개월이라고 명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유형별 평균 조사기간¹⁾〉

(단위: 일)

조사 유형	평균 조사 기간
반덤핑	
원심조사	317.8
일몰재심	233.5
신규수출자재심	423.8
중간재심	402.0 ²⁾
우회덤핑조사	235.0
상계관세	
원심조사	381.4

주1: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2020년 9월1일 현재 최종판정이 나온 케이스만 집계하였으며, 조사기간이라 함은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종판정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주2: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총 6개 중간 재심 중에 5건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조사개시일로부터 현재(2020년 9월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함

자료: <http://www.dgtr.gov.in>

□ 미국, EU와 달리 인도는 예비판정 절차를 생략하여 전체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원심의 확정조치를 조속히 하는 반면 잠정조치를 발동하지 않는 양면적 측면이 있음¹⁾

-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된 반덤핑 원심조사에서 예비판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내린 경우보다 약 5배 많으며, 평균 조사기간도 약 30일 정도 단축
 -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최종판정이 나온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모두 예비판정 절차가 없었음
 - 예비판정의 생략으로 인해 조사기간은 다소 단축되었지만 예비판정결과에 따른 잠정조치¹²⁾의 발동 가능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음

〈반덤핑/상계관세 원심조사에서 예비판정 유무별 평균 조사기간과 조사건수〉

(단위: 일, 건)

구분	반덤핑		상계관세	
	평균 조사기간	조사 건수	평균 조사기간	조사 건수
예비판정 있음	345.1	10	0	0
예비판정 없음	312.3	50	381.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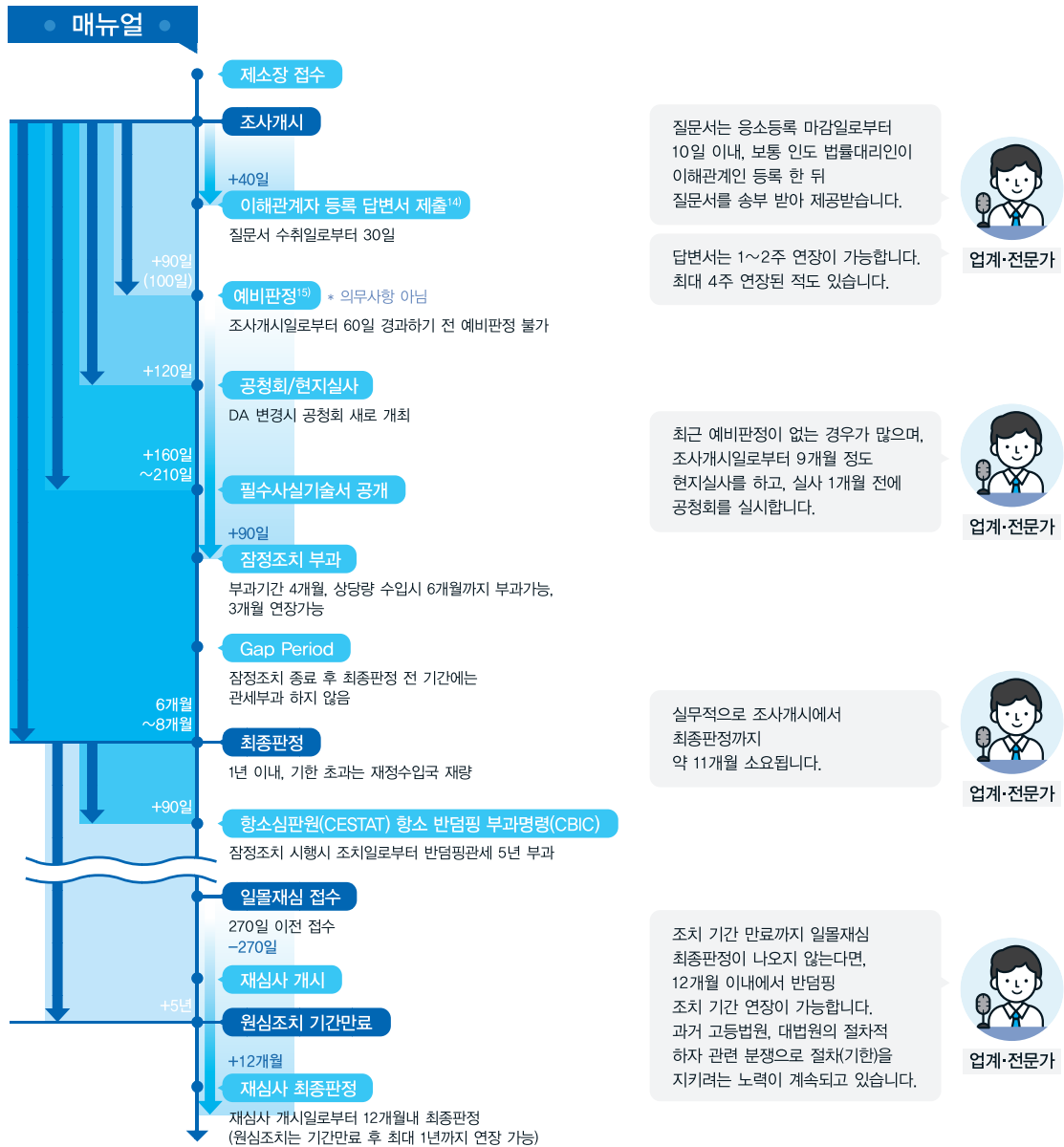
주: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2020년 9월1일 현재 최종판정이 나온 조사만 집계하였으며, 조사가 도중에 철회된 경우는 제외

자료: <http://www.dgtr.gov.in>

11) 반덤핑조사절차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참고.

12) 덤핑(보조금) 수입 심화로 인해 내수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필요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잠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DGTR, Manual of Operating Practices fo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2018), p.376, p.474 참고.

〈인도 반덤핑 조사 단계별 기한 및 업계 의견¹³⁾〉



13) DGTR, 2018년 무역구제 조사매뉴얼 (2018);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DKC 글로벌 트레이드 컨설팅 인터뷰 참고.

14) DGTR, 'Streamlining of Investigation Process - Registration of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rade Notice No. 11/28, (2018년 9월10일).

15) 인도 무역구제 조사매뉴얼 상 기간이 상이하게 명시(p.8, p.376)

※ 최근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무역구제총국의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¹⁶⁾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및 현재 유례없이 많은 조사 진행으로 인해 조사관별 조사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당국에서는 수출자 · 생산자의 답변서 제출 연장 요청을 가급적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 진행 중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조사 기간도 그에 따라 다소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한국을 포함하여 15개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압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019년 7월 3일에 조사개시 되었는데 최근 조사기간을 2021년 1월 21일까지 연장한다는 공고가 나왔다.¹⁷⁾ 이렇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데에는 조사에 대응한 15개국의 생산자 · 수출자가 다수인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무역구제총국장의 교체가 잦아 공청회가 중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직 무역구제총국장의 공청회 참석이 의무화되면서 동일한 조사에서 공청회가 여러 번 개최¹⁸⁾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살펴보기 힘든 독특한 관행이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7일 개시된 한국, 대만 및 사우디아라비아산 아세톤 일몰재심의 경우 2020년 8월 현재까지 무역구제총국장이 세 차례 바뀌면서 공청회 역시 세 번 개최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결국 일몰재심 조사기한이 2020년 9월30일까지¹⁹⁾연장된 바 있다.

(2) 규제의 존속 기한

□ (원심조사) DGTR에서 예비판정 혹은 최종판정 후 재정수입국(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Department of Revenue, CBIC)은 3개월 내 관세명령을 내려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 잠정관세 부과일자로부터 5년간 관세를 부과함

-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 잠정관세 부과 종료일부터 반덤핑 최종 관세 부과일 전일까지의 공백(Gap Period)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하지 않음

16)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p.18.

17) DGTR, Office Memorandum, 'Subject: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from China PR, Korea RP, European Union, Japan, Taiwan, Indonesia, USA, Thailand, South Africa, UAE, Hong Kong, Singapore, Mexico, Vietnam and Malaysia,' (2020년 7월2일).

18) 새로운 무역구제총국장 임명 시 최종판결 전까지 새롭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Automotive Tyre Manufacturers Association v Designated Authority & Ors. (2011) 2 SCC 258).

19) DGTR, 'Subject: Extension of time period to complete the investigation in the combined Anti-dumping Duty- Sunset Review (SSR) initiated on 7th August 2019 concerning imports of 'Acetone' from Korea RP, Taiwan and Saudi Arabia-regarding.', (2020년 8월6일)

- (일몰재심) 반덤핑 부과기간 만료 270일 전까지 재심 접수가 가능하며, 270일 경과 시 240일까지 지연가산금과 함께 접수가 가능함(240일 이내 제출되는 재심신청은 수리 불가)
 - 접수된 제소장은 15일 내 점검하여 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흠결이 있을 경우 5일내 보완할 수 있으며, 제소장 접수 후 45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기존 조치의 만료일 이전에 재심사 관련 최종판정이 불가할 경우 기존 조치는 재심사 최종판정일까지 유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의 연장도 기존 조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허용됨
 - － 한국산 NBR 반덤핑 사건 관련 대법원 및 델리 고등법원의 판정에 따르면, 일몰재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관세의 부과를 연장할지 여부는 기존 조치의 만료일(부과일로부터 5년) 전에 공고해야 함

(3) 비관계 상사의 답변 의무 (밸류체인인 완전성 입증)

- 상사를 통한 간접수출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사 여부, 국내외 상사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밸류체인(생산자→국내 상사 또는 제3국 상사→인도 수입자) 상에 있는 모든 업체가 조사 대응을 해야 함
 -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 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비관계상사의 인도 수출물량이 관련 생산자의 전체 수출물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생산자가 비협조인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답변이 부인되고 AFA가 적용됨
 - － 미국, EU 등 타 국가 조사기관의 경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수출에 관여된 ‘관계사’는 답변의무가 있으나 생산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비관계상사’에게까지 답변의무를 부과하지는 아니함
 - 비협조 상사를 통한 수출 물량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상사의 비협조는 피소업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피소업체는 물량의 비중을 떠나 사실상 ‘모든 상사’로부터 답변서 제출 협조를 받고자 함
 - － 업계 및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비협조 상사의 수출물량이 생산자 전체 수출물량의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산자의 전체 수출에 AFA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20) The Supreme Court of India, Civil Appellate Jurisdiction NOS.008309–008310 (2017).

21) DGTR,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 p.343, p.308.

22) DGTR,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 원문(p.308): “In case the share of exports to India of unrelated exporters not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constitutes more than 30% of the total volume of exports to India by the respective Producer, then the responding producer may be considered non-cooperative and the entire response is liable to be rejected.”

- 전체 수출에 AFA가 적용되는 것을 피한 경우에도 생산자의 덤핑마진은 조사에 대응한 물량 관련 덤핑마진과 비협조상사의 수출물량 관련 AFA가 적용된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여 산정됨 (예를 들어, 비협조 상사의 수출물량이 전체의 5%인 경우 '생산자의 덤핑마진 = 조사에 대응한 물량 95% x 덤핑마진 7% + 조사에 대응하지 않은 물량 5% x AFA가 적용된 덤핑마진 40% = 8.65%'로 산정됨)
- 비협조 상사는 조사에 대응한 생산자의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고율의 기타율(any other producer's rate)을 적용함
- 밸류체인 상의 모든 생산자/수출자가 답변해야 하는 의무는 인도만의 독특한 조사 관행으로서 답변자가 체감하는 인도 반덤핑 조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파악됨



자료: DGTR, 2018년 무역구제 조사매뉴얼 (2018), Chapter 12. Determination of Next Export Price 참고

(4)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의 적용²³⁾

□ (조사 미참여) 대인도 수출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는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에 응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비협조로 간주되어 AFA에 의거한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음

- 인도 반덤핑 규정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와 동일하게 조사대상 업체 수가 많아 실무적으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조사대상 답변자 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조사 초기에 의무답변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적시에 답변을 제출한 경우 각 업체별 덤핑 마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²⁴⁾

23) 인도 관세법과 반덤핑관세 시행령은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라는 용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동 보고서에서는 비협조 업체에게 불리한 추론에 근거하여 이용가능 정보를 적용하는 관행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널리 쓰이는 AFA 용어를 사용함.

24) Rule 17(3) of AD Rules 원문: "The designated authority shall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article under investigation:... Provided further that the designated authority shall,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any exporter or producer, though not selected initially, who submit necessary information in time, except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or producers are so large that individual examination would be unduly burdensome and prevent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 인도 무역구제 매뉴얼은 ▲샘플링을 통해 답변자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샘플링 결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조사된 업체의 가중평균덤핑마진을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인도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함
- 가령 중국산 아마사(Flax Yarn) 반덤핑 조사의 경우 8개 업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용접파이프 반덤핑 조사에서는 7개 업체, 중국산 공기압 타이어(New Pneumatic tyres) 반덤핑 조사는 6개 업체에 대해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으며, 최근 규제가 철회된 PTA 종료재심의 경우 제조자가 샘플링을 요청하였으나 이때에도 샘플링 없이 재심이 진행된 바 있음
- 일반적으로 샘플링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 적용하는 기타율(All other rate)은 조사된 업체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인 반면, 인도에서는 대응하지 않은 업체에게 적용하는 기타율(Any other producer's rate)이 고율의 벌칙적 마진이라는 점이 특징

□ (밸류체인 미입증) 인도의 반덤핑 조사에서 AFA의 적용은 밸류체인 입증 쟁점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함

- 피조사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일부 상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피조사업체 답변 전체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미보고 상사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 마진을 상승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 (최근 AFA 적용 사례) 과거에는 피조사업체가 비협조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AFA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조사당국에서 특정 사항을 빌미삼아 AFA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 이용’ 쟁점 관련 사례

한국산 A 제품의 생산자인 B회사는 관계사와 함께 답변을 성실히 제출하였으나, 인도 조사당국은 동 답변서 일부가 규정된 포맷을 따르지 않고, 생산원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예비판정 시 생산자의 내수 판매 가격을 부인하였다. 예비판정 이후 조사당국은 두 개의 서한을 통해 B회사의 미비점을 지적하였고, B회사는 추가 답변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조사당국은 추가답변서 상의 정보가 원 답변서 상의 정보와 정합성이 맞지 않고, 생산 및 판매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며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결국 최종판정에서 조사당국은 B회사가 제출한 답변서 전체를 부인하고 1995년 반덤핑관세 시행령 Rule 6(8)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정상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조사당국은 여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 끝에 사실상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인 인도 국내생산자가 제공한 판매 송장(invoices)에 근거하여 정상 가치와 수출 가격을 산정하였다.

(5) 인도 국내산업의 비생산 모델에 대한 반덤핑 조치 예외 여부

- 인도 조사당국은 조사대상물품 범위 내 특정 모델 제외 요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인도 국내생산자의 ‘생산설비’ 보유 여부는 특정 세부품목 제외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외국 생산자·수출자가 제외를 요청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인도 국내생산자가 ‘대체가능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품질의 차이 또는 상업적 생산 가능 여부를 떠나 특정물품에 대한 제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²⁵⁾

※ EU, 일본, 미국 및 한국산 석도강판(Coated/Plated Tin Mill Flat Rolled Steel Products) 반덤핑 조사²⁶⁾에서의 특정 물품 제외 요청 관련 쟁점

조사개시 공고문 상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는 ‘주석 또는 크로뮴(산화크로뮴)이 단면 또는 양면에 도금된 석도강판’으로 ‘전기전해방법으로 주석을 도금한 석도강판(Electrolytic Tin Plate, ETP), 전해크로뮴산처리 강판(Tin Free Steel, TFS), 전기전해방법으로 크로뮴을 도금한 석도강판(Electrolytic Chromium Coated Steel, ECCS)’을 포함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수출자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정 물품 제외를 요청하였다. 하나는 수입되는 비정품(non-prime products)과 인도에서 생산되는 비정품이 동종물품이 아니고, 정품(prime products)은 낮은 품질과 싼 가격의 비정품과 전혀 대체가능하지 않으므로 비정품을 조사대상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사대상물품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특화된 특정 모델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가령 일본에서 수입되는 비스페놀-A/BPA 또는 크로뮴이 없는 제품의 경우, 인도 국내 생산자들은 동일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대체가능한 제품 역시 기술적 및 상업적 측면에서 생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 조사당국은 수출자들의 상기 제외 요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먼저 ‘비정품’ 쟁점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비정품이 조사대상물품으로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 한 조사대상물품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기존의 일관된 관행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특히 수입산(정품 및 비정품 모두)의 기본 제조 공정, 용도, 제조원가가 인도 국내생산품의 그것과 모두 동일한 점, 정품과 비정품을 구분하는 뚜렷한 물리적 특성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품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으며 제외는 오히려 수출자들의 우회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우려하였다.

기술적으로 특화된 특정 물품 쟁점의 경우에도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차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은 쟁점이 된 특정 물품이 수입된 적이 없으므로 인도 내 해당 수요가 없다는 국내산업의 의견을 받아 들었다. 또한 인도 생산자가 쟁점이 된 특정물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수출자 측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대상범위에서 특정 모델을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5) 이장완, 안민호, 인도 반덤핑제도와 운영상의 특징 분석, 통상법률 103 (2012), p.56-57.

26) DGTR, Final Findings, ‘Subject: Final Findings in anti-dumping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Coated/Plated Tin Mill Flat Rolled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or exported from the European Union, Japan, USA and Korea RP.’, (2020년 6월17일).

(6) 높은 수준의 조사(재심) 개시 대비 실제 조치 비율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왔으며²⁷⁾, 조사개시 대비 실제 반덤핑 조치로 이어지는 규제 비율도 높은 편임
-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2020년 9월1일 현재 최종판정이 나온 케이스 중 원심 조사개시 후 조치가 실제로 부과된 비율은 73.1%(67건 조사개시 중 49건 부과 조치)에 이릅니다
 - 특히 일몰재심은 78.4%(37건 재심사 개시 중 29건 연장조치), 신규수출자재심 88.9% (9건 재심사 개시 중 8건 부과조치), 상계관세 90%(10건 조사개시 중 9건 부과조치) 등 높은 비율로 규제가 이루어짐
 -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누적 건수 대비 규제조치 건수의 비율은 73.8%로 WTO 회원국의 동 비율 평균치(65%)를 상회함²⁸⁾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가 실제 조치 부과로 이어지는 규제 비율〉

(단위: 건)

조사 유형	관세부과(연장)(A)	조사(조치)종료(B) ¹⁾	합계(C=A+B)	조치 규제 비율(A/C)
반덤핑				
원심조사	49	18	67	73.1%
일몰재심	29	8	37	78.4%
신규수출자재심	8	1	9	88.9%
중간재심	0	1	1	0.0%
우회덤핑조사	3	0	3	100.0%
상계관세				
원심조사	9	1	10	90.0%

주1: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고 2020년 9월1일 현재 최종판정이 나온 케이스만 집계하였으며, 조사(조치) 종료는 조사당국에서 부정판정을 내린 경우 또는 조사(재심) 중 철회를 포함함

자료: <http://www.dgtr.gov.in>

27)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7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세계 2위 제소국인 미국은 동 기간 728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2020년 8월24일 방문)

28) 김수경, 인도반덤핑제도의 특징과 현황 연구, 공정무역연구 55 (2018), p.82.

※ 무역구제총국장(Director General, DG)과 무역구제 조치의 빈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 제도의 활용은 실제 덤핑/보조금혜택을 받은 수입, 실물 경기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무역구제총국장의 자유무역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주의를 중시했던 Sunil Kumar 前무역구제총국장이 재임했던 2018년-19년 기간 동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조치)가 종료된 경우는 총 28건이었던 반면, 이후 Bhupinder S. Bhalla 총국장이 재임했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조사(조치)가 종료된 경우가 1건에 불과하다. 2018-19년 동안 신규로 개시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 역시 124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59건에 이르는 등 조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방식과 인도의 총관세 산정 방식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방식) DGTR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의 반덤핑/상계관세 산정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덤핑 관세는 주로 종량세 기준으로, 상계관세는 종가세 기준으로 부과됨

- 다른 국가들은 주로 종가세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는 반면, 인도가 주로 취하는 종량세 방식은 수출물품의 가격이 하락세에 있을 경우 종가세 대비 반덤핑 관세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큰 바, 보다 강력한 수입억제 역할을 함²⁹⁾
- 2019년 6월18일 발표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정방식을 보면 크게 종량세(Fixed Duty), 기준 가격(Reference Price), 그리고 종가세(Ad-valorem Duty)가 있음
 - 종량세는 덤핑마진(Dumping Margin, DM) 또는 보조금마진(Subsidy Margin, SM)과 산업피해마진(Injury Margin, IM) 중 낮은 금액을 물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
 - 기준가격은 재판매가격(Landed Value, LV)에 덤핑마진과 산업피해마진 중 낮은 금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책정
 - 종가세는 덤핑마진과 산업피해마진 중 낮은 금액을 수입품의 CIF금액으로 나누어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임

29)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 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p.59; 이장완, 안민호, 인도 반덤핑제도와 운영상의 특징 분석, 통상법률 103(2012), p.61.

- 기준가격은 조사대상물품 내 모델이나 스펙(Product Classification Number, PCN)별로 이질성이 큰 경우나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에 주로 권고되는 방식

– 아래 두 사례는 각 산정 유형별로 계산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금액(율)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줌³⁰⁾

〈사례 1 - 덤핑/보조금 마진이 산업피해마진보다 높은 경우〉

CIF수입가격 (\$/MT)	재판매가격 (\$/MT)	덤핑/보조금마진 (\$/MT)	산업피해마진 (\$/MT)	종량세 (\$/MT)	증가세(%)	기준가격 (\$/MT)
1,000	1,200	100	75	75	7.5%	1,275

〈사례 2 - 덤핑/보조금 마진이 산업피해마진보다 낮은 경우〉

CIF수입가격 (\$/MT)	재판매가격 (\$/MT)	덤핑/보조금마진 (\$/MT)	산업피해마진 (\$/MT)	종량세 (\$/MT)	증가세(%)	기준가격 (\$/MT)
1,000	1,200	60	100	60	6%	1,260

□ (총 관세 산정 방식) 인도의 총 관세는 여러 다양한 관세들이 누적적으로 합산되어 산정됨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가 수입품의 가격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해당 관세 부과 공고문에 게시된 율보다 더 큰 경우가 일반적임

- 인도의 총 관세는 기본관세(Basic Duty)와 부가관세(Additional Duty)³²⁾, 특별부가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관세구조 및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인도 관세 산정 방식의 예]

(1) CIF 가격 - 물품 가격, 보험, 운임 포함

(2) BCD(Basic Custom Duty), 기본관세

(3) Additional Duty (ADC), 부가관세

(4) Customs Education Cess(EC), 교육세

(5) Special Additional Duty (SAD), 특별부가관세

항목	세율 ³¹⁾	금액	비고
(1) CIF		100	
(2) BCD	10%	10 (A)	CIF x BCD
(3) ADC	12%	13.2 (B)	{CIF + (A)} x ADC
(4) EC	3%	0.696 (C)	{(A) + (B)} x EC
(5) SAD	4%	4.95584 (D)	{CIF + (A) + (B) + (C)} x SAD
총 관세금액		28.85184	(A) + (B) + (C) + (D)

30) DGTR, Methodology Regarding Various Forms of ADD/CVD, Office Memorandum, (2019년 6월18일).

31) 명시된 세율은 예시로서, 실제 적용 세율 및 관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32) 상계관세 혹은 부가관세라고 부르며, 내국 물품세(excise duty)와 동일한 명목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임.

4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 인도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시사점

□ **(체계 재정비와 절차적 요건 준수)** 최근 법규 제·개정 및 매뉴얼 작업을 통해 조사 과정상의 절차적 요건들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됨

- 2020년 2월 12일자로 시행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 개정은 ‘우회’ 규정의 신설 및 개정 등 좀 더 적극적인 제도 운영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보완하는 측면이 큼
- 원심 및 재심의 조사과정에 포함된 각 절차(답변서 제출, 실사, 공청회, 필수사실기술서 공개 등) 및 절차별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절차적 요소들을 준수하는 편임
 - 공청회의 경우 현직 무역구제총국장의 공청회 참석을 의무로 규정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과거에는 일몰재심이 원심조치기간 만료 후 개시되거나, 일몰재심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 **(공격적 조사 관행)** 밸류체인 의 완전성 입증, 성실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AFA 적용 사례 등 공격적 조사 관행으로 우리 기업의 조사 대응에 부담을 초래

- (밸류체인) 상사를 통한 간접 수출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사 여부, 국내외 상사 여부를 불문하고 수출 선상의 모든 업체들에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관행임
 - 비협조 상사를 통한 수출 물량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생산자의 전체 답변서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사의 답변의무’는 인도 반덤핑 조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임
-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과거에는 피조사업체가 비협조적인 경우에만 AFA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성실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항을 빌미삼아 AFA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불투명한 판정 과정) 구체적인 마진 산정 과정 및 피해 판정 과정이 불투명한 점도 수출자들의 조사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필수사실기술서 및 최종판정문에 마진 산정과 피해 판정 과정이 기술되지만 절차적 기술인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수치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조사 개시 전 대응) 인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추후 성공적인 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을 사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인도의 조사 관행 상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는 접수 즉시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소 또는 조사개시가 확인되는 시점 이전부터 꾸준히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피조사업체와 관계없는 국내외 비관계 당사들도 모두 조사에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인도 고유의 관행을 사전에 숙지하여 가능하면 직수출 및 협조 가능한 상사를 통한 수출 전략으로 추후 조사 대응의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음

업계 인터뷰 - 인도 수입규제 대응 방안 팁 1.

반덤핑 조사 주관팀을 통한 전사적 대응이 중요

반덤핑 조사에 대응할 때는 국내에서 받는 세무조사에 임하는 이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불합리한 관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덤핑 조사에서 요구하는 영업, 생산, 재무 자료구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팀에서 내부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반덤핑 조사 주관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전사적 대응을 효율화해야 한다.

선제적 시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자문사 선정 필요

반덤핑 조사 대응에 필요한 자문사도 가급적 일찍 선정할 필요가 있다.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자문사 선정에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개시에 임박해서 또는 개시 직후에 자문사 선정을 할 경우 방대한 양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을 빚을 위험이 있다. 가급적 업계 내에서 반덤핑 제소 루머가 나온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조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자문사 선정 등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조사 대응) 인도 조사당국이 질의 답변서와 실사, 공청회 등 조사 과정의 절차적 요소들을 빠짐 없이 진행하고 있는바, 각 과정에서 덤핑/보조금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해야 함

- 인도 DGTR은 타 국가 조사기관과 비교하더라도 ①총국장의 공청회 참석 의무화, ②원심 조치 만료 전 일몰재심사 조사 완료 등 절차적 요건을 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

- 코로나 19 이후 공표된 ‘비대면’ 방식의 수행지침³³⁾을 숙지하여, 데스크 실사 및 화상컨퍼런스 등 과거와 다소 달라진 대응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대면 방식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제고 등 현장 실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답변서 및 입증 자료를 더욱 철저히 구비하여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안에 따라 인도 현지 내 수요기업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전방위적 공조를 하는 것도 실제 수입규제 조치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례로 2020년 2월2일 고순도 테레프탈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PTA)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철회되었는데, 이는 핵심 수요처인 섬유산업의 강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³⁴⁾

업체인터뷰 – 인도 수입규제 대응 방안 팁 2.

철저한 답변 준비와 적극적 소명

일단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경우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은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자문사 선정 시 수입규제 대응 능력은 물론 특히 ‘인도’ 대응과 관련된 평판이 높은지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직접 면접을 실시한 후에 선정할 것을 권고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답변서 제출 및 실사 검증 과정에서 실책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필요시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수입자·수요자와의 공조도 모색

반덤핑 답변서뿐만 아니라 수입자·수요자와의 공조도 필요하다. 자사의 경우 인도 자동차, 가전 시장에서 선두에 있는 현대차, 폭스바겐, 삼성, 엘지 등 유수의 회사와 공조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시 해당 물품의 수요자에 미치는 부담을 호소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 (조사 후 대응) DGTR의 최종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판원(CESTAT)으로 항소(Appeal) 또는 고등법원으로의 청원(Writ Petition)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소요 시간과 비용, 항소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33) 추후 별도의 연장공고가 없을 경우 2020년 9월20일까지 유효, DGTR, Temporary Changes in the Trade Remedy Investigation Processes Due to COVID-19 Pandemic, Trade Notice:01/2020, (2020년 4월10일).

34) 인도의 PTA 반덤핑 조치 철회는 구체적으로 2016년 7월부터 조치 부과된 중국,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대만산 PTA 및 2019년 7월부터 일몰재심사로 연장 조치된 중국, EU, 한국 및 태국산 PTA를 포함함. The Economic Times, “Abolition of anti-dumping duty on PTA,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SIMA”, (2020년 2월2일) 기사 참고.

- CESTAT은 DGTR의 최종판정 및 재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³⁵⁾ 부과명령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실체적, 절차적 쟁점을 심리하는 기관임
 - 1996년에서 2011년 사이 CESTAT의 반덤핑 관련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1개월인 반면³⁶⁾, 업계 인터뷰에 의하면 최근 실무적으로는 CESTAT의 사건 처리에 평균 12~15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 CESTAT은 DGTR이 내린 결정을 인용하거나, 관세액 변경, 또는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³⁷⁾ 고등법원의 경우 법조항의 해석, 최종판정결과의 법적오류 및 절차적 불일치성 여부를 심사
 - 고등법원은 정부당국이 내린 행정결정을 다루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이루어진 절차와 판정, 재무부의 관세명령이 청원인의 기본권이나 법적권리 침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고등법원의 심리대상이 됨
- 한편, CESTAT을 통해 수입규제 관세가 철회 또는 감액되더라도 기존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별도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함
 - CESTAT에 의해 결정된 관세액은 판정일 이후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해당 관세를 직접 부담했고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환급이 가능함³⁸⁾

(3)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 (반덤핑 조사 신청 통보 의무 이행) 한-인도 CEPA는 반덤핑 조사에서 WTO 협정보다 상호 호혜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간 공조가 필요함
 - 한-인도 CEPA에서는 반덤핑 조사개시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 10일 전에 제소장 접수 사실을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통보 활성화는 피소된 업계들의 보다 빠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과도한 조사 관행 시정) 무역구제 조사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사 기준보다 수출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인도 조사관행(예: 밸류체인의 완전성 입증 의무 등)의 문제점 공론화 필요

35) 기존에 Customs Tariff Act 1975년 Section 9C에 의하면 CESTAT 항소 대상은 반덤핑/상계관세조치만 해당되었던 반면, 2019년 7월2일 1975년 Customs Tariff Act의 Section 9C 개정이 발효되면서 Section 8B하의 세이프가드 조치도 CESTAT 항소대상에 포함됨.

36) Sampath, Seetharaman,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Actions Country Study: India,' 7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2012), p.252-256.

37) 김수경, 인도반덤핑제도의 특징과 현황 연구, 공정무역연구 55 (2018). p.78.

38) Ibid.

- 최근 성실한 조사 대응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항을 빌미삼아 AFA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인 조사관행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
- (조사개시 요건의 엄격한 준수) 최근 유례없이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와 관련하여 앞으로 엄격한 검토를 거쳐 조사개시가 될 수 있도록 관행 개선에 대한 요청이 필요함
 - 최근 인도 섬유업계에서도 인도 무역구제 정책 운영의 과도함에 반발하고 있으며³⁹⁾, 2020년 상반기 반덤핑 조사개시는 총 58건으로 92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며 ‘제소장 제출 = 조사개시’라는 오해를 외부에 심어줄 정도임
- (중복 규제 및 잦은 조치 연장) 종료재심사에 의해 조치를 5년~10년씩 연장하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대인도 수출기업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바 인도 규제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대한민국 수입규제 중 일부는 동일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가 중복 조치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종료재심사를 통해 조치가 연장되는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

39) 2020년 8월28일 인도섬유연합(ITF), 남인도직물협회(SIMA), 전인도직물협회(ISA)등 인도 섬유업계는 2010년부터 부과된 수입 비스코스 원사(Viscose Staple Fibre)의 반덤핑 조치 철폐를 요청함. The New Indian Express, “Spinning industry seeks end to anti-dumping duty on Viscose Staple fibre”, (2020년 8월29일) 기사 참고.

참고자료

김수경, 인도반덤핑제도의 특징과 현황 연구, 공정무역연구 55(2018).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 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 인도 개황 (2018).

이장완, 안민호, 인도 반덤핑제도와 운영상의 특징 분석, 통상법률 103(2012).

홍정완,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KITA 통상리포트 Vol.01 (2020).

DGTR, Manual of Operating Practices Fo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2018).

DGTR, Revised proposal for change in Indian Anti-Dumping and Anti-Subsidy Rules(2019년 7월12일).

DGTR, Revised proposal for change in Indian Anti-Dumping and Anti-Subsidy Rules.(2019년 7월12일).

DGTR, Proposal for change in Indian Safeguard Rule.(2019년 7월22일).

DGTR, Compendium of Laws & Regulations on Trade Remedies.(2018년 8월1일 기준).

DGTR, 'Streamlining of Investigation Process – Registration of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rade Notice No. 11/28. (2018년 9월10일).

DGTR, Office Memorandum, 'Subject: Extention of time for completi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from China PR, Korea RP, European Union, Japan, Taiwan, Indonesia, USA, Thailand, South Africa, UAE, Hong Kong, Singapore, Mexico, Vietnam and Malaysia.' (2020년 7월2일).

DGTR, 'Subject: Extension of time period to complete the investigation in the combined Anti-dumping Duty– Sunset Review (SSR) initiated on 7th August 2019 concerning imports of 'Acetone' from Korea RP, Taiwan and Saudi Arabia-regarding.', (2020년 8월6일)

DGTR, Final Findings, 'Subject: Anti-dumping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Resin– whether or not further processed into compound', originating in or exported from China PR and Korea RP.',(2020년 2월19일).

DGTR, Final Findings,'Subject: Final Findings in anti-dumping investigation concerning imports of Coated/ Plated Tin Mill Flat Rolled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or exported from the European Union, Japan, USA and Korea RP.', (2020년 6월17일).

DGTR, Methodology Regarding Various Forms of ADD/CVD, Office Memorandum, (2019년 6월18일).

DGTR, Temporary Changes in the Trade Remedy Investigation Processes Due to COVID-19 Pandemic, Trade Notice:01/2020, (2020년 4월10일).

Ministry of Finance of India, Notification No. 09/2020—Customs (N.T.)(2020년 2월2일).

Ministry of Finance of India, Notification No. 10/2020—Customs (N.T.)(2020년 2월2일).

Ministry of Finance of India, Notification No. 6/2012—Customs (N.T.)(2012년 1월19일).

Sampath, Seetharaman,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Actions Country Study: India,'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7(2012).

Supreme Court of India, Civil Appellate Jurisdiction NOS.008309—008310 (2017).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2020년 8월24일 방문)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indl-goods/svs/chem--fertilisers/abolition-of-anti-dumping-duty-on-pta-a-step-in-the-right-direction-sima/articleshow/73847258.cms?from=mdr>
(2020년 9월2일 방문)

<https://www.newindianexpress.com/business/2020/aug/29/spinning-industry-seeks-end-to-anti-dumping-duty-on-viscose-staple-fibre-2189794.html>(2020년 9월2일 방문)

[도움을 주신 분]

포스코 이승준 과장, 노우송 대리

한국석유화학협회 변영준 대리

DKC 글로벌 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회계사, 현용훈 회계사

〈2019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설송이/이미연	19.03.21
2	한-중미 FTA 발효와 FTA를 활용한 수출 유망품목	곽동철	19.09.30
3	미일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정균/곽동철	19.10.31
4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 -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	제현정/설송이/이원석/ 김정균/곽동철/김경화/ 홍정완	19.11.18
5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 최근 미국 우회덤핑 조사를 중심으로 -	김경화	19.12.13

〈2020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홍정완	20.03.10
2	백투더퓨처: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곽동철	20.03.24
3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설송이	20.03.31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향방	이원석/김정균	20.04.08
5	미국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관행의 변화와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의 시사점	김경화	20.04.22
6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통상지원센터	20.05.19
7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설송이/김경화	20.05.20
8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노동 분쟁해결절차	설송이	20.07.22
9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김정균	20.07.27
10	EU-베트남 FTA(EVFTA) 발효에 따른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김정균/신규섭	20.08.05
11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김경화/홍정완	20.09.14

❶ 상기 통상리포트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통상리포트 URL :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List.do>

❷ 메일을 통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 신청메일 : trifta@kita.net

현장

고객

미래

“
무역의 길을 여는
신뢰의 동반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01. 현장중심

무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현장 보고서 및 정책 대안 제시

02.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무역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상품, 서비스,
FTA 등의 중장기 연구

03. 고객중심

회원사, 정부, 유관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중심 연구 활동

국제무역통상연구의

Think Tank



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it.kita.net

KITA

TRADE REPORT

2020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층
2020. 09. 14